

관리번호: A - DB - 028

주관부서 : 경영기획팀

ESG 위원회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1.1 목적	1-1
1.2 정의	1-1
1.3 적용범위	1-1
1.4 직무와 권한	1-1

제2장 구 성

2.1 구성 및 임기	2-1
2.2 위원장	2-1

제3장 회 의

3.1 소집권자	3-1
3.2 소집절차	3-1
3.3 결의방법	3-1
3.4 부의사항	3-1
3.5 관계인의 의견청취	3-2
3.6 의사록	3-2
3.7 통지의무	3-2

제4장 기 타

4.1 간사	4-1
4.2 규정의 개폐	4-1

제5장 부 칙

5.1 시행일	5-1
---------	-----

제1장 총 칙

1.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ESG 관련 활동”은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내지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1.3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직무와 권한

1.4.1 위원회는 회사가 E(환경)S(사회)G(지배구조)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ESG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 쟁점사항을 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 및 승인한다.

1.4.2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단, 이사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재심의 할 수 있다.

1.4.3 위원회는 ESG 외부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ESG RISK로 판단되는 사안 그리고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2.1 구성 및 임기

- 2.1.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 2.1.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2.1.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2.2 위원장

- 2.2.1 위원회는 본 규정 3.3에 의해 결정된 위원장을 선정한다.
- 2.2.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2.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2.2.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2.5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 단,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선임위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3.1 소집권자

3.1.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본 규정 2.2.5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2 소집절차

3.2.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2.2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3.2.1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3.3 결의방법

3.3.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3.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4 부의사항

3.4.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4.1.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3.4.1.2 ESG 중장기 목표 심의 및 승인

3.4.1.3 ESG 관련 활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 심의 및 승인

3.4.1.4 ESG 위원회 위원장 선임

3.4.1.5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4.1.6 ESG 관련 규정 제·개정

3.4.1.7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4.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4.2.1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진행사항

3.4.2.2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이행 성과 및 결과보고

3.4.2.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5 관계인의 의견청취

3.5.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5.2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6 의사록

3.6.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3.6.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7 통지의무

3.7.1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2 3.7.1에 따라 통지 후 일부 이사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 개최 후 이사회에서 재결의한다.

제4장 기 타

4.1 간사

4.1.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4.1.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의의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 및 보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2 규정의 개폐

4.2.1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5장 부 칙

5.1 시행일

5.1.1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5.1.2 본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